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 628 |

제출연월일 : 2008. 5.

발의자 : 권순정의원외 2명

1. 제정이유

구민들이 생활환경의 가까운 거리에서 알 권리(知情權)를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 하고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나.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 함(안 제2조)
-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작은도서관의 설비 조건을 1,000권 이상의 장서와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최소 67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위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설도서관은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설 공공도서관에도 공간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력으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도서관 학교 및 독서문화지도자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로 규정함(안 제8조)
- 아.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9조)
-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작은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4 (제111회-건설위 제3차부록)

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와 관계 공무원,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

3. 근거법 규

- 가. 도서관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16조, 제44조
- 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0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역정보 제공, 독서공간 확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서 보유 등의 조건을 고루 갖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안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기존 공공시설 중 최소 67평방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 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설 공공 도서관도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도서관 운영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4장 작은도서관 위원회

제9조(도서관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3.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2조(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2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5. 8(목)
- 나. 제출자 : 권순정 의원외 2명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8. 5. 16(금)
- 라. 위원회 재심사 일자 : 2008. 6. 16(월)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권순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작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 하고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

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 함(안 제2조)

-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열람 · 대출,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작은도서관의 설비 조건을 1,000권 이상의 장서와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최소 67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위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도록 함(안 제5조)
-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설도서관은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설 공공도서관에도 공간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력으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 · 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도서관 학교 및 독서문화지도자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로 규정함(안 제8조)
-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수립·심의·조정 하도록 함(안 제9

조)

-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작은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와 관계 공무원,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종진)

- 우리시의 도서관 시설은 북구가 중앙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의 문화교실을 이용한 사설도서관과 교회내의 도서관 등 약 20여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편임.
- 특히 우리 중구는 공공도서관인 중부도서관이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마을문고 형태의 도서방 7개소, 종교법인에서 운영중인 소규모 도서관 3개소, 대단위 아파트에서 운영 중인 1개소가 있지만 중부 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규모의 시설임.
-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문고를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고, 최근 부천, 순천, 익산, 창원시 등에서 시민중심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조례제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과제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작은도서관 워크숍과 부천시, 순천시 작은도서관 관련 제정시행중인 조례 등 벤치마킹을 거쳐 제안한 조례안으로 제정과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지나
- 다만, 앞서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해온 부천시, 순천시, 창원시 등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적계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매년 지원액이 증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볼 때
- 재정능력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 건립은 물론, 작은도서관의 장서구입비, 운영비 등의 지원에도 적지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근거법규

- 도서관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16조, 제44조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0조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작은도서관 명칭을 구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수정가결사항

| 제정안 | 수정안 |
|--|--|
| (제명) 울산광역시중구 <u>작은도서관</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명) 울산광역시중구 <u>마을도서관</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조(목적)----- ----- <u>작은도서관</u> (이하 “작은도서관”이라한다) -----. | 제1조(목적)----- ----- <u>마을도서관</u> (이하 “마을도서관”이라한다) -----. |
| 제2조(정의)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 -----. 2. ----- <u>작은도서관</u> 이----- ----- -----. | 제2조(정의) 1. “마을도서관”이라 함은----- ----- -----. 2. ----- <u>마을도서관</u> 이----- ----- -----. |
| 제2장 <u>작은도서관</u> 설치 제3조(<u>작은도서관</u> 기능) <u>작은도서관</u> 은----- 1~4(생략) | 제2장 <u>마을도서관</u> 설치 제3조(<u>마을도서관</u> 기능) <u>마을도서관</u> 은----- 1~4(제정안과 같음) |
| 제4조(공간 및 위치) <u>작은도서관</u> 의----- 1. <u>작은도서관</u> 은 -----. 2. ----- <u>작은도서관</u> 이----- -----. | 제4조(공간 및 위치) <u>마을도서관</u> 의----- 1. <u>마을도서관</u> 은 -----. 2. ----- <u>마을도서관</u> 이----- -----. |

수정가결사항

| 제정안 | 수정안 |
|---|--|
|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u>작은도서관은</u> ----. 1.~4(생략) |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u>마을도서관은</u> ----. 1.~4(제정안과 같음) |
|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 ----- ----- ----- ② <u>작은도서관이</u> ----- ----- ----- ③~④(생략) |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 ----- ----- ----- ② <u>마을도서관이</u> ----- ----- ----- ③~④(제정안과 같음) |
| 제7조(<u>작은도서관 운영 등</u>) ① <u>작은도서관</u> ---. ----- ②(생략) ③ 구청장은 <u>작은도서관이</u> ----- ----- -----. | 제7조(<u>마을도서관 운영 등</u>) ① <u>마을도서관</u> ---. ----- ②(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u>마을도서관이</u> ----- ----- -----. |
|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 <u>작은도서관</u> 운영자----- <u>작은도서관의</u> --- ----- ----- 1.~3(생략) |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 <u>마을도서관</u> 운영자----- <u>마을도서관의</u> --- ----- ----- 1.~3(제정안과 같음) |
| 제4장 <u>작은도서관 위원회</u> | 제4장 <u>마을도서관 위원회</u> |
| 제9조(도서관위원회 설치) ① <u>작은도서관</u> --- ----- ----- <u>작은도서관위원회</u> ----- -----. | 제9조(도서관위원회 설치) ① <u>마을도서관</u> --- ----- ----- <u>작은도서관위원회</u> ----- -----. |

수정가결사항

| 제정안 | 수정안 |
|---|--|
| ② <u>작은도서관이</u> -----. 1. 작은도서관-----. 2. <u>작은도서관</u> -----. 3. <u>작은도서관</u> -----. 4.~6(생략) 7. <u>작은도서관</u> -----. 8. 그 밖에 <u>작은도서관</u> -----. | ② <u>마을도서관이</u> -----. 1. <u>마을도서관</u> -----. 2. <u>마을도서관</u> -----. 3. <u>마을도서관</u> -----. 4.~6(제정안과 같음) 7. <u>마을도서관</u> -----. 8. 그 밖에 <u>마을도서관</u> -----.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4(생략) ④-----작은 도서관업무-----. |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1.~4(제정안과 같음) ④-----마을 도서관업무-----. |
|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③(생략) |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③(제정안과 같음) |
| 제12조(임기 및 위·해촉) ①(생략) ②(생략) 1.~4(생략) | 제12조(임기 및 위·해촉)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1.~4(제정안과 같음) |
| 제13조(회의)①~②(생략) | 제13조(회의)①~②(제정안과 같음) |
| 제14조(수당 등)(생략) | 제14조(수당 등)(제정안과 같음) |
| 제15조(시행규칙)(생략) | 제15조(시행규칙)(제정안과 같음) |